



지방재정관련 판례

행정자치부

1. 대법원 2005. 9. 29. 선고 2002다73807 판결 [손해배상(공)]

판결요지

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에 정한 권리를 가진 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없고 위 법 제16조 제2항,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정을 거쳐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한다.

【원고,상고인】 ○○군수산업협동조합

【피고,피상고인】 ○○군

【피고보조참가인】 대한민국

【원심판결】 서울고법 2002. 10. 30. 선고 2002나9884 판결

【주 문】 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【이 유】

1.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

공유수면매립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구 공유수면매립법(1990. 8. 1.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아래에서도 같다) 제16

조 제1항에 의한 보상을 함이 없이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시행하여 그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,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나,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이 고의·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일 것을 요한다.